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7월 22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8. 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4. 12. 3.)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2. 23.)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현준)

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 연령을 결격사유에서 제외(안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등)

1)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제11조제1항제1호¹⁾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기관사 자격)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령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신체·적성검사, 교육훈련, 시험, 면허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어느 시점에 결격사유를 적용할지 불분명하며 현재는 교육생 모집시 성년만 선발하여 교육훈련 시점에 결격사유를 적용 중임. 이에 따라 19세 미만 청년은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 및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되어 있던 상황임.

개정안은 연령 결격사유 적용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이라도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임. 정부는 개정안에 따를 때 19세 미만자도 교육훈련 및 시험 통과가 가능하며 면허 취득 시점을 현행 대비 6개월 가량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1)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

2) 검토의견

연령별 철도차량 기관사 취득 현황을 보면, 전체 철도차량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 중 19세 이상 3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73.3%에 해당되는데, 22세 이후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철도차량 기관사 취득 연령 현황 (2022.1.~2023.12. 제2종 전기차량 면허 기준)】

연령(세)	19~30									31~40	41~50	51~60	총계
	19	20	21	22	23	24	25	26~30	소계				
인원(명)	10	35	38	116	234	299	273	750	1,755	345	215	80	2,395
비중(%)	0.4	1.5	1.6	4.8	9.8	12.5	11.4	31.3	73.3	14.4	9.0	3.3	100

※ 자료: 국토교통부

현행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보면,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운전교육훈련의 소요시간이 통상 약 4개월 소요²⁾되는 등 면허

2) 디젤차량 810시간, 제1종 전기차량 810시간, 제2종 전기차량 680시간, 철도장비 340시간이 소요되며, 고속철도차량은 디젤, 제1종, 제2종 면허소지자가 4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발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개정안과 같이 규율할 경우 19세 미만이라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19세가 되는 시기에 기관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기관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자격취득을 가능하게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에 포함된 자격시험 응시 개선 법안 3건 중 하나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정부가 제출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97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13호)이 각각 환노위, 문체위에 계류 중임³⁾.

【청년들의 조기 자립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 목록】

연번	제명 및 조문	국가자격명	소관상임위
1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제2항, 제5조제2항	공인노무사	환경노동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체육위원회
3	철도안전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의8제2항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국토교통위원회

※ 자료: 국토교통부

3) 개정안 관련 법안 및 유사 입법례는 참고자료 참조

다만,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시점과 시험에 응시를 하는 시점에서는 연령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19세가 임박한 나이가 아닌 경우에도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을 받거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바,⁴⁾ 이와 같은 시험 운영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도 운영의 합리성, 철도안전의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임.

나. 관제자격증명시험 제한 연령을 결격사유에서 제외(안 제21조의 8 제2항)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제21조의4⁵⁾ 관제자격증명(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를 준용하게 되어있는데,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제자격 증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령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기관사 자격증 발급과 절차가 유사하여 19세 미만자가 관제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시험응시가 어려운 상황임.

개정안은 기관사 자격에 대한 개정과 동일하게 관제사 자격에 대해서도 자격시험 응시, 교육훈련 이수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 연령제한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관제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자격취득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u>관제자격증명시험</u> 에 응시하려는 사람	② 제2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

5) 「철도안전법」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현행	개정안
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삭제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에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는 “관제업무”로 본다.	<u>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관제자격증명시험-----.</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철도관제사 취득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22세 이후 철도관제사를 취득하는 것이 대부분임.

【철도 관제사 취득 연령 현황 (2022.1.~2023.12. 기준)】

연령(세)	19~30									31~ 40	41~ 50	51~ 60	총계
	19	20	21	22	23	24	25	26~30	소계				
인원(명)	0	2	7	16	38	30	25	126	244	96	53	7	400
비중(%)	0	0.5	1.8	4.0	9.5	7.5	6.3	31.5	61.0	24.0	13.3	1.8	100

※ 자료: 국토교통부

관제자격증명을 받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면, 관제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는 관제적성검사 및 관제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관제자격증명을 위한 관제교육훈련 이수시간이 철도 관제자격은 360시간, 도시철도 관제자격은 280시간 소요됨.

개정안에 따를 때 기관사 자격과 같이 19세 미만자가 관련 교육훈련 및 시험 응시 후 19세가 되는 시기에 관제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청년들의 빠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동일하게 관제자격증명시험 교육훈련 및 시험응시 단계에서 연령에 대한 결격사유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할 경우 19세에 임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제사 교육훈련 및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이 관제사 자격 제도운영의 합리성, 철도안전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동 개정안은 원안가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은 제2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생략)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현행과 같음)
<u>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u>	<u>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 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 시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 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 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u>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 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 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 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 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	② -----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 ----- -----

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 ----- ----- -----.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생략) ② <u>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u> ③ · ④ (생략)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u>관제자격증명시험은 제2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